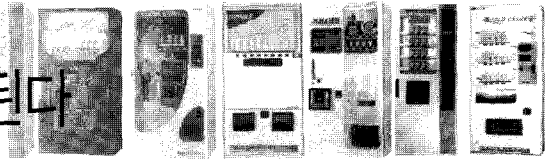


# 자판기 분야 표준약관 마련된다



자판기 분야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적극적인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표준약관이 마련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자판기분야를 포함, 주요거래 9분야에 걸쳐 표준약관(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올초부터 진행, 최근 해당 산업 각분야의 검토의견을 수렴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초안을 제출했다. 이 초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수정 보완을 진행한 후 내년 공청회를 거쳐 공식약관으로 확정되게 된다.

본 협회에서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요청을 받아 자판기 분야 표준약관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종합한 업계 의견서를 제출했다. 자판기 분야 표준약관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근본취지는 높이 살 수 있으나 산업에 끼치는 영향은 엄밀히 말해 득이 될게 없다.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조항들이 오히려 기존 자판기 유통에 불리한 측면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 가뜰이나 불황인 산업현실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하지만 자판기 유통도 보다 선진화하고 소비자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어짜피 거쳐 가야할 진통이다. 따라서 이 차에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표준약관이 마련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본란에서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마련한 자판기분야 표준약관 초안의 내용과 본 협회가 업계의 의견을 수렴, 제출한 의견서를 중심으로 현재의 표준약관 초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보완방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 한국소비자보호원 자동판매기 매매 표준약관 초안

###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자동판매기(이하 자판기) 매도인(이하 갑)이 위 계약서에 표기된 자판기를 매수인(이하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에 의한 갑과 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계약서)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계약서를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매도인과 매수인
2. 자판기의 종류
3. 자판기의 인도시기와 장소
4. 금액과 지급방법
5. 계약금
6. 당사자의 특약
7. 계약 일시

② 갑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할부 계약시에는 동법 제 3조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 1통을 지체없이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 3조 (할부대금의 지급)

자판기의 매매가 할부계약인 경우에는 을은 자판기 설치일자를 기준으로 익월부터 매월 동 일자에 지급한다. 단, 갑과 을간에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 4조 (할부 구입과 담보제공)

① 을은 자판기를 인수하기 전까지 갑과 합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갑이 인정하는 연대보증인 1인 이상 입보.
2. 을이 부담한 할부금에 대해 갑이 지정하는 보험회사와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할부판매보증금 보험 계약체결
- ② 을은 채무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담보로서 전항 각호의 의무사항을 대체할 수 있다.

### 제 5조 (자판기 설치전 임의해제)

- ① 을은 자판기를 인수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② 전항에 의해 을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갑은 을의 해제사유를 불문하고,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 6조 (담보책임)

- ① 갑은 자판기의 인도시 을에게 제작사의 품질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② 갑은 자판기 제작사의 품질보증이 있다는 사유로 매도인으로서 담보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 ③ 기타 자판기의 결함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의 공산품 보상기준을 준용한다.

### 제 7조 (제조물책임)

갑은 자판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을이 생명·신체 또는 당해 자판기 이외의 재산적 손해를 입은 경우에 자판기 제조사와 연대하여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 8조(기한이익의 상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은 할부금 분할상환의 기한이익을 상실한다.

1. 매회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연체하고 그 연체된 금액이 할부가격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2. 취업, 결혼등의 사유로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3. 파산한 경우

**제 9조(항변권)**

을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지 않은 자판기에 한하여, 을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자판기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1. 자판기의 매매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2. 을에게 약정한 인도시기까지 자판기가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
3. 갑이 제6조 또는 제 7조의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갑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계약의 해제)**

- ① 갑이 자판기의 인도를 지체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을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을이 갑에게 해제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 을은 인도받은 자판기를 지체없이 반납하고 갑은 이미 지급받은 금액 및 제비용을 반환한다.
- ② 갑의 허위 과장된 설명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을이 이를 입증하면 사용손료 없이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다만 설치 후 10일이 경과한 경우는 ④항의 사용손료를 부담하고 해제할 수 있다.
- ③ 전 ①항, ②항의 경우에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갑은 을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 을이 할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갑은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갑이 을에게 해제를 통지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자판기의 사용손료에 따라 정산하여 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단, 1개월이 경과한 상태에서 월 단위 미만의 사용일이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을 한다. 이때의 갑은 위 정산 잔금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사용손료」**

사용 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후
사용 손료	20	26	32	37	42	47	52	57	62	66	70	74	78	82	85	이후 85

**제11조(지연손해금)**

을이 대금의 지급 또는 할부금 불입을 지체한 경우에는 연체금액에 대하여 각 연체일로부터 불입일 까지 년(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주소변경 등의 통지의무)**

- ① 을은 자판기 인수 후 을 또는 연대보증인의 주소변경 등으로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갑에게 서면통지 하여야 한다.
- ② 을이 전항의 통지를 채택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을이 부담한다.

**제13조(개인신용정보의 보호)**

- ① 갑은 을 또는 연대보증인의 신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업자로부터 당해 계약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② 갑은 을과의 매매거래 및 전항에 의해 지목한 을 또는 연대보증인의 정보를 을과 해당 연대보증인의 동의없이 신용정보업자 및 기타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14조(계약의 해석 등)**

- ①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칙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해결한다.
- ② 본 약관의 변경 또는 수정은 갑과 을이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제15조(관할법원)**

- ① 갑과 을은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을 민사소송법에 의한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② 할부거래인 경우에는 채소 당시의 을의 주소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단, 을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전항에 의한다

**「자판기 분야 표준약관」에 대한 업계 의견 분석**

**1. [제5조 자판기 설치전 임의해제 조항]**

한국소비자보호원안

- ① 을은 자판기를 인수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② 전항에 의해 을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갑은 을의 해제사유를 불문하고,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업계의견

- ① 동일적용이나 삭제
- ② 전항에 의해 을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갑은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을 을에게 반환한다. 단, 을이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철회한 경우 갑은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 2항의 문제점

②항의 “을의 해제사유를 불문하고” 임의 해제 시는 을(구매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에도 갑(전문점)은 기 수령한 계약금을 반환해야 함으로 영업 활동 시 발생한 제반비용에 대해서도 전액손해가 예상된다. 이 조항은 특히 기계의 구매자가 기계설치까지 마치고 마음이 바뀔 경우에도 통용될 수가 있어 합리적인 조항이라기보다는 분쟁의 요소가 많은 조항,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조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을의 해제사유를 불문하고”가 아닌 해제사유범위를 구체적으로 준거하거나,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의 범위를 정해 놓아야 만이 부작용과 혼란을 막을 수 있다.

2. [제10조 계약의 해제] 조항

한국소비자보호원안

② 갑의 허위 과장된 설명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을이 이를 입증하면 사용손료 없이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다만 설치 후 10일이 경과한 경우는 ④항의 사용손료를 부담하고 해제할 수 있다.

④ 을이 할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갑은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갑이 을에게 해제를 통지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자판기의 사용손율에 따라 정산하여 을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단, 1개월이 경과한 상태에서 월 단위 미만의 사용일이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을 한다. 이때의 갑은 위 정산 잔금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사용손율」

사용 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후
사용 손료	20	26	32	37	42	47	52	57	62	66	70	74	78	82	85	이후 85

업계의견

② 허위 과장된 설명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을이 이를 입증하면 사용손료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은 방법적인 면이 명시가 없어 유권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음은 물론 을이 주관적인 심정변화에 의해 구매의사를 반복할 경우에도 계약이 쉽게 해지될 수 있음

에 따라 갑에게 있어서는 큰 피해가 가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조항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허위과장 설명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는 한 삭제되어야 한다.

④ 동일적용. 단 사용요율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야 한다.

사용 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후
사용 손료	30	38	42	47	52	57	61	64	67	70	73	76	97	82	85	85

■ ④항의 문제점

사용 개월 1~13개월 까지의 상기의 사용손율은 현재 각 할부사에서(엘지카드, 삼성카드)적용 중인 손율로 이는 과거 소비자보호원에서 일본의 소비자보호법을 검토한 후 이를 구매실정에 맞게 제정, 적용을 권고한 사항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사용손율이다. 따라서 이는 적절한 수준의 사용손율로 정착이 된 마당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자판기 분야의 유통특성을 고려치 않고 초기 손율의 요율을 낮추게 된다면 제품 철수시 유통점에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 제4조(할부구입과 담보제공)

한국소비자보호원안

① 을은 자판기를 인수하기 전까지 갑과 합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갑이 인정하는 연대보증인 1인 이상 입보.
2. 을이 부담한 할부금에 대해 갑이 지정하는 보험회사와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할부판매보증금보험 계약 체결

업계의견

2호의 할부판매보증금보험은 현재 실시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큰 의미가 없음에 따라 삭제가 되어야 한다.